

# 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회신

정광량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

##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및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바,
  - 현 시점에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 여러개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하단 조문으로 하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각기 다른 기금들을 통합 심의 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금별 성격이 상이하므로, 하단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가능.

## 2. 관재활동비 지급가능 여부

### Q 질의내용

-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 중 관재담당공무원 수당이 삭제되었습니다.(p.33)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기준에서 삭제된 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금액도 자체 결정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 A 회신내용

- 특정업무경비는 크게 5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이하 “기타 특정 업무경비”)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러나 2010년도부터 소방, 자치경찰, 특사경에게는 위의 대민활동비와 기타특정업무경비 병급 지급이 가능하나, 그 외 공무원에게는 병급지급이 되지 않고 두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

- 따라서 관재, 법무,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의 경우 월지급액이 대민활동비와 동일한 1인 월 5만원이므로 항목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한 것임.
- 한편,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하고 직책급여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 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관재담당공무원의 관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재활동비가 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라는 의미로 판단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 3. 기금 회계관직의 지정에 대하여

#### Q 질의내용

- 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기금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관직 지정은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담당(팀장)로 되어있음
-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업무상 부담이 많이되서 각 읍면동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요..
- 지금 현재 기금운용관이 재난안전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이 담당팀장인데요. 읍면동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출납을 할수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 그러면 회계관직을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  
현행) 기금운용관 : 과장  
기금출납원 : 팀장
- 읍면동에서 기금운용 및 출납이 가능하도록 개정시 기금운용관이 과장인데 분임운용관은 직급



을 1단계 낮춰서 지정해야하는지

기금운용관 : 과장 분임, 기금운용관: 본청 담당팀장, 읍면동 담당팀장

기금출납원 : 담당자, 읍면동은 분임기금출납원으로 정리해야하는지?

- 아니면 기금운용관을 도처럼 국장으로 올리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 읍면동장으로 해야하는지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에 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급(위) 등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매년 우리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관련 회계관직을 예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련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나 해당 자치단체 자치법규(재무회계규칙 등),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의 사무범위를 고려하여 적의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4. 학교 교실 증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각 학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의 도시지역 집중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로 급당 인원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35명이상 과밀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

급운영에 애로가 있고,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학교 시설이 최선책이 될 수 있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증축과 분반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이 학교에서 증축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대응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동 규정 제2조 2의2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또는 6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보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지?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우선 동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교육기관(고등학교 이하)의 신·증축사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른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한 본질적 교육사무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5. 조례제정 시 마을발전기금 지원규정 마련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 Q 질의내용

- ○○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그동안의 악취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정 시 마을발전 지원금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여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기금이라면, 그리고 그 기금의 설치용도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발전기금'의 근거,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답변.

## 6. 지방자치단체 기금 존속기한

### Q 질의내용

- ○시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을 적용하여,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 이내(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5년 이내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 아울러, 201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2011. 8. 1)에서 ○○도로부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받았음.

### <참고자료>

- ○○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002년 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2005년 제정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기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정기적으로 기금의 존속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도 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기금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예산지출관련

### Q 질의내용

- 제5호태풍 메아리 피해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는 예비비(69,000천원)를 편성하여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 69,000원이 지원되어 내려옴.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질문1) 예비비 승인 후 통계목)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편성 후 지출을 하였기 때문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지출액을 반납처리 하고 국비를 지출하면 되는 지...

- ○○도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배부되었습니다.(3,000만원-경상보조금 긴급배정) 우리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기금 회계가 없음.

질문1) 우리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기금 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후 사용하여 하여야 하는지..

질문2)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받아서 지출하여도 가능한지



###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회계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부터 기금보조금이 교부되었다면, 귀 자치단체에서는 시도비 보조금(521-01)으로 세입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8. 민간자본보조사업 해당목록 여부

### Q 질의내용

-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그 목(402 민간자본이전-01민간자본보조)을 사용 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 문의
- 보조사업자 쪽에서 책상, 이불장 2개, 옷걸이, TV 받침(서랍형식), 찬장 등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조사업목록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고 문의, 가능한 것인한지?

### A 회신내용

- 민간자본보조(402-01)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307-02)와 달리 그 내용이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한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책상, 이불장 등은 소규모 물품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경상경비에 가까우므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9. 공공용건축물(청사)신축 시 투융자심사 시 · 군 자체심사 여부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의 제1항제1호의 자체심사기준 중 가목의단서규정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시비)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의 청사는 신축사업은 자체심사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시 본청 및 의회의 신축사업을 제외한 행정구의 청사신축을 300억원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시·군의 자체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시·도 의회심사 대상인지, 중앙의회심사 대상인지

A 회신내용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심사로 규정하고 있고, 청사의 경우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용인시의 일반구는 본청청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고, 의존재원(지방채 포함)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심사기관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10. 서로다른 예산과목을 합쳐서 발주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 경로당 보수사업(지붕수리)의 일환으로 건설과 예산 1천만원, 복지과 예산 2천만원이 재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내려온 예산을 합쳐서 총 3천만원으로 경로당 보수사업을 발주할수 있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 재배정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면 예산을 재배정한 부서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예산을 재배정 받은 부서는 한 부서이므로 재배정 받은 부서에서는 재배정 받은 금액의 총액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11. 예산 재배정 기준

### Q 질의내용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54~155 P)
  - 재배정절차 : 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 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계획수립 : 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 이하 생략 - 라고 정의하고 있음.
- 위 기준에 의하면 본청의 각과에 편성되어 배정된 예산을 산하기관(사업소)에 재배정할 수는 있으나, 산하기관(사업소)에 편성되어 배정된 예산을 본청의 각 과에는 재배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예산의 재배정은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당초 편성부서)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부서(재 배정 받을 부서)를 정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본청에서 산하기관으로만 재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예) ○○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A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업비 중 일부는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디자인 관련부서에 예산을 재배정 집행할 경우 불법, 부당(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 A 회신내용

- 예산의 재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사업소로의 위임(재배정)은 가능하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의 위임(재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귀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12. 지방예산 편성 가능 여부

### Q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9가지 경비외에는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에 지방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초청 체육대회)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또한, 동 기준에서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입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사료됨.



### 1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는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라고 명시하여 위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 시행에 제한을 받도록 하였음.

위 제3항 제3호의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의 기준은 무엇인지?

1. 예산추계에 의해 편성된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실제 한해동안 변동분을 포함한 일반회계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3.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나, 추경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행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 당초예산 세입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발생할 모든 수입을 추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이라함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4. 예산변경 관련

Q 질의내용

- 일반운영비 201-01에 보면 1. 일반수용비 5. 급량비, 6. 임차료 등으로 나누어져있음.
- 201-03(행사운영비)를 201-01(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할때는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서 지출할수있는데 201-01안에 포함되어있는 임차료의 경우 임차의 목적이 아닌 다른(인쇄,광고 등) 목적으로 집행하고자 할때
  1.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지?
  2. 협조를 받게된다면 예산의 변경에 속하는 것입니까?

A 회신내용

- 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귀 질의 경우 사무관리비(201-01)통계목내에 경비분류기준 중 임차료를 인쇄, 광고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사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15.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가 심의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본예산 편성이후 도정 시책상 20억원 이상의 신규(시급) 사업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
- 추경시점에서 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하여 심의 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추가 심의로 가능한지 여부



- 또는 다음연도 연동화계획 수립시 그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가능한지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단위사업비가 100억원일 경우 그 이상의 예산편성(투·융자 범위 내)도 가능한지 여부

###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 및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매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서 당해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계획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본 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서 계획후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비는 차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16.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보고 방식

### Q 질의내용

- 예산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융자심사-예산편성지침마련-예산편성-의회의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음
-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및 의회의결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지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나머지 예산과정이 진행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개최한 것처럼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7. 지방채발행 관련 규정 유권해석

Q 질의내용

-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A 회신내용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성(지방채발행 의결, 예산의결) 등을 고려하고 지방채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결을 지방채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예산의결로 갈음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함



## 18. 이장자녀장학금 적용대상(대학생 가능여부)

### Q 질의내용

- 현재 이장처우개선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지원하고 있음.  
- 우리군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고등학생, 대학생 까지 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문) (행정안전부)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 적용대상이 중.고교생으로 표기되어 있어 (p 104)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 8>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통·리장의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통·리장이 아닌 통·리장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관련

### Q 질의내용



- 민방위 비상대피 훈련 유도요원을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원이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민방위 훈련 참석하는 실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 8>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301-10)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와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등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자치단체에서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원에게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 유도요원 활동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비훈련 행사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민방위 훈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 구청사 증축의 시투자심사 대상 여부

Q 질의내용

- 저희 구청의 경우 구청사가 협소하여 많은 부서들이 다른 건물에 임차하여 들어가 있는 실정으로 구청사를 증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그런데 당초 계획은 구청사중 별관 한 곳을 증수 및 면적을 넓히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구청사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음.
- 구 본청사 및 의회 청사는 금액 및 재원에 관계 없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저희의 경우 구 본청사와 별도로 새로운 건물을 기존의 구청사 부지에 지으려고 할 때 시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증축의 개념으로 봐서 재원이 모두 구재원이면 구 투자심사만 받아도 되는지?

※ 저희 구청의 경우 재원이 모두 구 자체재원이고 본청사가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일부에서 구청사 부지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히 재원 조달 여부에 상관없이 시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012년 예산편성에서 구청사 증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본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 때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호)으로 당해 사업이 건축법상의 신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총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기관을 결정하면 될 것임.

## 21. 국도비 신청에 대한 부담비율 해석

### Q 질의내용

- 2012년 본예산 편성관련 지역향토축제지원 행사 경비로 국비,도비 지원을 하면서 당초 지원신청액 보다 결정된 국비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 이에 따른 국비,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부담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 축제행사 총사업비(신청) : 100억
- 국도비 신청액 : 100억
  - 국 비 : 50억 (50%)
  - 도 비 : 25억 (25%)
  - 시 비 : 25억 (25%)

- 국비 지원 결정액 : 국비 : 30억 (50%)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414(2011.5.18)호에 의한 201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참고

질의1) 자치단체에서 국도비 지원 신청액 100억에 대해 국도비내시 부담비율을 국비 30억으로 지원하면서 부담비율을 50%로 결정할 경우 국비 및 도비, 부담비율에 맞춰 총사업비 60억으로 국비 30억(50%), 도비 15억(25%), 시비 15억(25%)으로 내시 결정된 금액에 맞춰 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질의2) 지역향토축제지원 행사의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정률(50:50)로 정해져 국비 지원결정액 30억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시군의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초 신청액 총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국비지원 결정액 30억을 뺀 도비, 시비 부담액 70억에 대하여 국비, 도비,시비의 부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 총사업비 : 100억 [ 국비 30억(30%), 도비 20억(20%), 시비 50억(50%)]

질의3) 질의2)와 같이 상급 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부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정하였다면, 하급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도비및 시비부담액 결정금액 중 임의로 시비부담액과 부담비율을 변경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지?

**A** 회신내용

○ 질의 1의 경우

국·도비 신청액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시 결정된 지방부담비율에 맞추어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정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한 지방비는 보조금 신청시 정한 부담비율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임의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있어 국비신청시 정한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역자치체인 도와 기초자치체인 시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2. 2012년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

### Q 질의내용

#### ● 1. 사업기간 변경 여부

- 계속비 사업인 경우 사업비는 12년까지 예산액이 있으나 13년은 사업비가 없을 때, 사업 추진 상 이월액이 생길 수 있고 잔여공사, 마무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13년까지 작성하여 의회 제출이 가능한지?

#### ● 2. 사업비 변경 여부, 변경 시기

- 계속비로 추진중인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본예산에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경에서 정리 후 다음연도 추경에서 조정해도 되는지?

### A 회신내용

(질문1 관련)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계속비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비 사업의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기간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숫자상으로 표기될 수 있는 2012년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최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액 등은 사고이월을 거쳐 다음연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관련)

○ 귀 질의의 계속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은 마무리 추경의 사업비 변경조정을 전제로 편성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경예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39조) 계속비 사업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최종 지방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기하나, 모든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가 승인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3.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 Q 질의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식대, 전화비(사무실명의전화와 개인명의전화 구분)와 인건비(간사, 사무국장 등) 등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는지?

### A 회신내용

-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업비외 운영비의 범위,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귀 자치단체가 방침을 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